

# 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75,853,514	20,275,605
일반회계	636,545,501	19,096,365
특별회계	39,308,013	1,179,240
기타특별회계	39,308,013	1,179,240
상수도사업	2,721,262	81,638
하수도사업	3,320,701	99,621
수질개선	10,752,771	322,583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66,200	16,986
의료급여기금	670,532	20,116
소득특화사업	6,000,000	180,000
농공단지조성사업	812,420	24,373
공영개발사업	6,417,471	192,524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92,400	2,772
행복주택사업	4,942,256	148,268
청사건립사업	3,012,000	90,36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,860,944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